

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10월 16일

성 동 구 청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명 칭 :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
- 나. 면 적 : 8,832.82m²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가. 착수 예정일 : 미정
- 나. 준공 예정일 : 미정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명 칭 : 마장동 4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마장 제3구역 조합)
-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42, 3층

5. 조합설립인가일

- 가. 일 시 : 2025. 10. 02.

6. 사업시행구역

